광 주 고 등 법 원

제주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제주)2022나12093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85(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239(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208(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222(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23(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78(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61(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09(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16(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215(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47(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246(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92(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30(병합) 손해배상(기)

(제주)2022나12154(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 서귀포시 솔오름로 12(동홍동) 대표자 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동건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유민권, 이상민
- 2.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제주시 노연로 12(노형동)
 대표이사 김기병, 백현, 김한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종범

피고1의 보조참가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중국 북경시 해정구 삼리하로 15호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816호(신문로 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저우나이샹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중화인민공화국인 왕타오

제 1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13874, 2020가합13973 (병합), 2020가합14075(병합), 2020가합14303(병합), 2020가합

14419(병합), 2020가합14631(병합), 2020가합14693(병합), 2020가합 14709(병합), 2020가합14792(병합), 2020가합14815(병합), 2020가합 14914(병합), 2020가합15030(병합), 2021가합11462(병합), 2021가합 11479(병합), 2021가합11486(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 한회사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2023. 7.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들의 피고 롯데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원고들과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강애순에게 262,352,696원 및 그중 74,957,913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112,436,870원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957,91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기호진에게 379,103,903원 및 그중 75,820,781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27,462,341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820,78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820,78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강애순, 기호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시원으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위약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위약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라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나.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강애순, 기호진에게 같은 표 '잔금'란 기재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잔금'란 기재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잔금 지급일'란 기재각 일자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고, 원고들에게 같은 표 '위약금(20%)'란 기재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각 일자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¹⁾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23. 5.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라고 진술하였고, 2023. 5. 4.자 원고들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 등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불복취지는 제1심에서 원금이 전부 인용된 계약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1심에서 50%로 감액된 위약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취지의 범위 내에서 감액되지 않은 위약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3쪽 5행의 "해석할 수 없으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위약금이 아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피고 롯데관광개발이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제1심판결 33쪽 17행 내지 34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이 사건 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신탁원부 중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6조는 '위탁자들은 분양대상 건축물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약정 당사자들 간에 미리 합의한 내용으로 피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약정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분양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을 하는 등 분양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실질적인 분양사업 주체가 녹지2이고 롯데관광은 신탁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부득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계약에 날인함으로 인해 롯데관광이 어떠한 배상책임, 벌금, 과태료, 기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녹지는 즉시 롯데관광이 입은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조항이 효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① 오히려 위 조항은 피고들 내부관계에서 계약

^{2) &#}x27;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를 뜻한다. 이하 같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의 궁극적인 부담주체를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로 정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 롯데관광개발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공동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중 '실질적인 분양사업 주체' 또는 '부득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라는 문언만으로 피고 롯데관광개발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롯데관광개발이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피고 그린랜드센터제 주로부터 매매대금을 분배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피고 그린랜드센터제 주가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해제 이후 제3자에게 매매계약 목적물을 재분양하고 분양대 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고 롯데관광개발의 경제적 불이익은 위 조항 등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 과의 사이에서 피고 롯데관광개발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 롯데관광개발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분할채무가 원칙이고, 피고들 사이에 연대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일반조항 특약사항 제1항에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각자 책임으로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와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롯데관광개발에게 공동매도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상인인 피고 들로서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매수대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공동매도인의 매수대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항 특약사항 제1항은 문언상 그 자체로 특별한 법률상 효과를 발휘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롯데관광개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34쪽 14행의 "2022. 11. 24.까지는"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 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므로, 항소심은 소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기 만 하면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당초에 정한 준공예정일 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것에 이 사건 면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던 점. ②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는 이 사건 면책사유 입증을 위하여 감 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 감정인은 치환공사로 인한 지연(61일), 제주도의 일기 사정으 로 인한 지연(15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연(53일), 타워 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지연(15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연(48일)으로 총 192일의 공사 지연일수가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점 등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감안하 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계약금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34쪽 19행 내지 36쪽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청구워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초과하여 지연되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원고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제3항 후문,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

4690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예정액은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으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여 그 액수 자체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대법원 2008다46906 판결). ②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과 동일한 액수의 위약금이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에게 귀속되는 점. ③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는 피고 그린랜드센터제 주 측에서 부동문자로 인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금액 또한 피고 그린랜 드센터제주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구속될 의사로 정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하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의 지배영역에 서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로 서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의 귀책사유가 적지 아니한 점. ⑤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의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피고 그린랜 드센터제주가 원고들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이 총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 지 급한 상태였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상업용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피고 롯데관광개발에 위탁하여 임대수익을 거두는 데 있었던 점,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준공예정일의 변경을 고지한 점 등 피고 그린랜드센터제 주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금액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금액보다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41쪽 19행 내지 42쪽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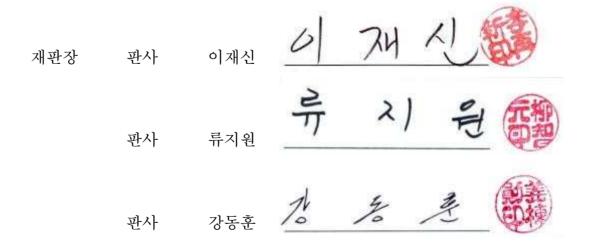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 총 분양대금×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취지를 초과하여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에게 그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2. 11.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추가로 인용한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7. 5.까지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그린랜드센터제주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위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와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원고 명단

1. 김상우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 105동 303호(보성리, 삼정G.edu)

2. 김성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0길 58-6, 301호(반포동)

3. 김현정

의왕시 장안중앙로 42, 102동 702호(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

4. 노미애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22동 1602호(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 박경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69길 20-20, 101동 1506호(사월동, 시지3차서한이다음)

6. 박성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109동 1103호(양덕동, 메트로시티)

7. 박혜자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 105동 303호(보성리, 삼정G.edu)

8. 서진원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0길 58-6, 301호(반포동)

9. 윤수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0길 58-6, 301호(반포동)

10. 윤영찬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81, 104동 402호(서초동, 서초자이아파트)

11. 정종섬

의왕시 백운호수로7길 11, 401호(학의동)

12. 홍순익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102동 4710호(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13. 강애순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7-11(삼송동)

14. 강은아

서귀포시 토상로17번길 15(토평동)

15. 고상호

제주시 원남6길 69, 301동 302호(도남동, 부웅크리스탈빌3차)

16. 고행린

제주시 동광로21길 25-1, 1층(일도이동)

17. 김인혁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765-18, 106동 1305호[유곡리, 현대제철(주)독신자숙소]

18. 김정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 101동 1903호(성수동1가, 강변건영아파트)

19. 도주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30, 8911동 304호(이의동,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20. 박수진

정읍시 수성3로 9, 301동 1406호(수성동, 주공3단지아파트)

21. 박정란

서울 강동구 상암로41가길 11, 101동 606호(천호동, 신동양빛여울아파트)

22. 신경아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2, 103동 1309호(진관동, 은뜨락)

23. 김명희

서울 강남구 선릉로103길 28, 202호(역삼동, 파크빌라)

24. 신원범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106동 2005호(용산동, 성서2차영남우방타운)

25. 김정미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106동 2005호(용산동, 성서2차영남우방타운)

26. 신정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61(옥암리)

27. 안강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 213동 2402호(가락동, 헬리오시티)

28. 임미옥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 213동 2402호(가락동, 헬리오시티)

29. 양민영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530(소길리)

30. 양선희

제주시 노형12길 24, 202동 1404호(노형동, 노형2차아이파크)

31. 고상수

제주시 노형12길 24, 202동 1404호(노형동, 노형2차아이파크)

32. 이성희

대전 유성구 어은로 57, 108동 603호(어은동, 한빛아파트)

33. 이순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10, 111동 305호(하왕십리동, 센트라스)

34. 이은주

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113, 119동 302호(미아동, 삼각산아이원아파트)

35. 이현미

부천시 석천로 216, 503동 2202호(중동, 은하마을대우,동부아파트)

36. 이현숙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326번길 10, 102동 901호(민락동, e편한세상오션테라스)

37. 정의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19. 205동 3803호(장항동, 킨텍스워시티2블럭)

38. 최병철

제주시 인다15길 5-11, 4동 505호(아라일동, 염광아파트)

39. 한광일

경남 창녕군 성산면 곽천대산로 126

40. 권채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31나길 22, 2동 106호(하왕십리동, 한신무학아파트)

41. 김왕식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길 24, 101동 1101호(서초동, 월드메르디앙오페라하우스)

42. 이수정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길 24, 101동 1101호(서초동, 월드메르디앙오페라하우스)

43. 박천일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43. 104동 103호(덕례리, 수시아아파트)

44. 박태서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242번길 47-1(산황동)

45. 이지영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2, 506동 302호(주엽동, 강선마을5단지아파트)

46. 변은영

서울 강남구 언주로71길 25, 405호(역삼동, 그레이스빌)

47. 석류미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 106동 402호(보성리, 삼정G.edu)

48. 손훈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37, 106동 1803호[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49. 이성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0길 35, C동 403호(독산동, 메트로타운)

50. 이용석

안성시 고수2로 70, 111동 2002호(당왕동, 안성당왕상점그린코아더베스트)

51. 조미우

제주시 오광로 94, 103동 405호(이호이동, 노형리츠하임테라스파크)

52. 최영신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42, 102동 604호(반여동, 센텀KCC스위첸)

53. 김소원

서귀포시 이어도로 153, 301호(대포동, 대포상지빌라)

54. 김은정

제주시 진군남4길 2-9, 301호(노형동)

55. 김혁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214동 2802호(잠실동, 리센츠)

56. 이혜강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81-146(하갈동)

57. 문윤희

제주시 진군길 1-2, 3층(노형동)

58. 송신복

제주시 신산마을길 3(내도동)

59. 오남규

제주시 광평동로 66, 109동 803호(노형동, 노형중흥에스클레스)

60. 위성미

서울 송파구 잠실로 88, 108동 801호(잠실동, 레이크팰리스)

61. 이광재

제주시 신산마을길 3(내도동)

62. 정동형

서울 서초구 잠원로 130, 602호(잠원동, 잠원씨제이빌리지)

63. 조은미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77, 302동 303호(구미동, 까치마을신원아파트)

64. 김미희주(KIM MIEHEE JU)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23, 1106동 602호(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11단지)

65. 김지인(KIM JEAN)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23, 1106동 602호(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11단지)

66. 조은성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107동 402호(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1단지아파트)

67. 이미영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107동 402호(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1단지아파트)

68. 신영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204번길 19, 102동 302호(제주영어교육도시꿈에그린아파트)

69. 한성욱

대전 유성구 오룡2길 81(탑립동)

70. 현영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5, 519동 1501호(수내동, 양지마을한양아파트)

71. 김애심

서울 노원구 동일로250길 18, 103동 1204호(상계동, 수락산벨리체아파트)

72. 박송이

제주시 원노형로 35-2, 1007호(노형동, 노형벽강하이본타워7차)

73. 손종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80, 112동 1401호(도곡리, 덕소두산위브아파트)

74. 이경신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5, 102동 902호(황금동, 태왕아너스아파트)

75. 이우길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58, 109동 1604호(구의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76. 황미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12, 4층(도계동)

77. 구선영

서울 강남구 자곡로 101, 610동 903호(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78. 오창식

서울 강남구 자곡로 101, 610동 903호(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79. 기호진

서울 서초구 태봉로2길 60. 307동 1001호(우면동. 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

80. 임원채

순천시 삼산초등길 20, 102동 1703호(매곡동, 신매곡서한이다움)

81. 지겸자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20번길 40-12(정발산동)

82. 최혜령

서울 중구 다산로 32, 33동 1001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83. 김영숙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7, 106동 2304호(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84. 민인욱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10동 1702호(정자동, 파크뷰)

85. 이권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62, 207동 1001호(백안리, 양평벽산블루밍아파트2단지)

86. 장경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62, 207동 1001호(백안리, 양평벽산블루밍아파트2단지)

87. 조성해

서울 서초구 명달로16길 17-5, 401호(서초동, 서초10차상지리츠빌)

88. 유영우

평택시 평택로 17, 106동 703호(평택동, 롯데인벤스스카이)

89. 이기욱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 84동 101호(반포동, 반포아파트)

90. 김병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114동 1202호(잠실동, 잠실엘스)

91. 김성환

제주시 수덕로 78, 103동 1403호(노형동, 노형이편한세상)

92. 권정구

제주시 수덕로 78, 103동 1403호(노형동, 노형이편한세상)

93. 임성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천산로 28, 317동 602호(고원아파트)

94. 이재춘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104동 106호(홍은동, 홍은벽산아파트)

95. 김학주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105동 1903호(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1단지아파트)

96. 오정우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26, G동 5209호(도곡동, 타워팰리스)

97. 김소연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26, G동 5209호(도곡동, 타워팰리스)

98. 한정재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92, 1013동 501호(이매동, 이매촌삼성아파트). 끝.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단위 : 원)

					AT		위약금		
순번	원고	계약일	계약금	잔금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항소심 인용금액	1심 인용금액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위약금(20%)
1	김상우	2017-03-23	76,608,394	-	2020-07-02	76,608,394	38,304,197	38,304,197	15,321,678
2	김성은	2018-04-20	169,360,937	-	2020-07-02	169,360,936	84,680,468	84,680,468	33,872,187
3	김현정	2017-10-21	74,569,746	-	2020-07-02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4	노미애	2017-12-07	75,320,855	-	2020-07-02	75,320,854	37,660,427	37,660,427	15,064,171
5	박경표	2017-09-28	74,569,746	-	2020-07-02	76,608,394	37,284,873	37,284,873	14,913,949
6	박성철	2017-12-16	75,320,855	-	2020-07-02	76,608,394	37,660,427	37,660,427	15,064,171
7	박혜자	2017-03-23	75,320,855	-	2020-07-02	76,608,394	37,660,427	37,660,427	15,064,171
'	ᆿ에사	2017-10-26	67,547,441	-	2020-07-02	76,608,394	33,773,720	33,773,720	13,509,488
8	서진원	2018-04-20	76,608,394	-	2020-07-02	76,608,394	38,304,197	38,304,197	15,321,678
9	윤수경	2018-04-30	173,450,544	-	2020-07-02	173,450,544	86,725,272	86,725,272	34,690,108
10	윤영찬	2017-06-12	74,569,746	-	2020-07-02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11	정종섬	2017-10-21	76,608,394	-	2020-07-02	76,608,394	38,304,197	38,304,197	15,321,678
12	홍순익	2017-05-01	77,395,996	-	2020-07-02	77,395,996	38,697,998	38,697,998	15,479,199
13	강애순	2017-08-15	74,957,913	112,436,870	2020-06-08	74,957,912	37,478,956	37,478,956	14,991,582
14	강은아	2017-06-29	61,036,050	-	2020-06-08	61,036,050	30,518,025	30,518,025	12,207,210
15	고상호	2017-07-21	75,745,526	-	2020-06-08	75,745,526	37,872,763	37,872,763	15,149,105
16	고행린	2017-06-30	75,745,526	-	2020-06-08	75,745,526	37,872,763	37,872,763	15,149,105
17	김인혁	2017-10-22	78,183,588	-	2020-06-08	78,183,588	39,091,794	39,091,794	15,636,717
18	김정수	2017-12-26	74,569,746	-	2020-06-08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19	도주아	2018-05-14	76,608,394	-	2020-06-08	76,608,394	38,304,197	38,304,197	15,321,678
20	박수진	2018-05-31	74,569,746	-	2020-06-08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21	박정란	2018-05-28	73,818,658	-	2020-06-08	73,818,658	36,909,329	36,909,329	14,763,731
22	신경아	2017 01 00	38,035,977		2020-06-08	38,035,976	19,017,988	19,017,988	7,607,195
23	김명희	2017-01-09	38,035,976	-	2020-06-08	38,035,976	19,017,988	19,017,988	7,607,195
24	신원범	2018-08-30	36,909,329	_	2020-06-08	36,909,328	18,454,664	18,454,664	7,381,865
25	김정미	. 2010-00-30	36,909,329	-	2020-06-08	36,909,328	18,454,664	18,454,664	7,381,865

					AT		위약금		
순번	원고	계약일	계약금	잔금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항소심 인용금액	1심 인용금액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위약금(20%)
26	신정섭	2017-12-20	77,395,996	-	2020-06-08	77,395,996	38,697,998	38,697,998	15,479,199
27	안강호	2017 07 15	37,910,391		2020-06-08	37,910,390	18,955,195	18,955,195	7,582,078
28	임미옥	2017-07-15	37,910,390	-	2020-06-08	37,910,390	18,955,195	18,955,195	7,582,078
29	양민영	2017-11-21	74,569,746	-	2020-06-08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30	양선희	2018-02-11	37,284,873	_	2020-06-08	37,284,872	18,642,436	18,642,436	7,456,974
31	고상수	2010 02 11	37,284,873		2020-06-08	37,284,872	18,642,436	18,642,436	7,456,974
32	이성희	2018-02-03	72,316,461	-	2020-06-08	72,316,460	36,158,230	36,158,230	14,463,292
33	이순한	2017-05-17	77,395,996	-	2020-06-08	77,395,996	38,697,998	38,697,998	15,479,199
34	이은주	2017-04-05	60,433,806	-	2020-06-08	60,433,806	30,216,903	30,216,903	12,086,761
35	이현미	2018-04-11	74,569,746	-	2020-06-08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36	이현숙	2017-01-10	78,971,201	-	2020-06-08	78,971,200	39,485,600	39,485,600	15,794,240
37	정의진	2017-05-24	78,183,588	-	2020-06-08	78,183,588	39,091,794	39,091,794	15,636,717
38	최병철	2017-07-21	63,547,249	-	2020-06-08	63,547,248	31,773,624	31,773,624	12,709,449
39	한광일	2018-09-09	74,569,746	-	2020-06-08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40	권채현	2017-05-17	177,134,663	-	2020-07-16	177,134,662	88,567,331	88,567,331	35,426,932
41	김왕식	2017 02 26	45,837,159		2020-07-16	45,837,158	22,918,579	22,918,579	9,167,431
42	이수정	2017-03-26	45,837,159	-	2020-07-16	45,837,158	22,918,579	22,918,579	9,167,431
43	박천일	2017-12-08	74,170,321	-	2020-07-16	74,170,320	37,085,160	37,085,160	14,834,064
44	박태서	2017-07-26	45,837,159		2020-07-16	45,837,158	22,918,579	22,918,579	9,167,431
45	이지영	2017-07-26	45,837,159	-	2020-07-16	45,837,158	22,918,579	22,918,579	9,167,431
46	변은영	2017-05-30	88,391,559	-	2020-07-16	88,391,558	44,195,779	44,195,779	17,678,311
47	석류미	2018-08-10	72,670,372	-	2020-07-16	72,670,372	36,335,186	36,335,186	14,534,074
48	손훈	2017-11-16	74,569,746	-	2020-07-16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49	이성희	2018-10-18	73,067,549	-	2020-07-16	73,067,548	36,533,774	36,533,774	14,613,509
50	이용석	2018-01-11	74,957,913	-	2020-07-16	74,957,912	37,478,956	37,478,956	14,991,582
51	조미우	2017-04-01	78,183,588	-	2020-07-16	78,183,588	39,091,794	39,091,794	15,636,717
52	최영신	2018-08-11	72,670,372	-	2020-07-16	72,670,372	36,335,186	36,335,186	14,534,074
53	김소원	2017-07-20	175,200,430	-	2020-08-11	175,200,430	87,600,215	87,600,215	35,040,086
54	김은정	2016-12-30	78,971,201	-	2020-08-11	78,971,200	39,485,600	39,485,600	15,794,240

					소자 ㅂㅂ		위약금		
순번	원고	계약일	계약금	잔금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항소심 인용금액	1심 인용금액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위약금(20%)
55	김 혁	2018-06-05	73,067,549	-	2020-08-11	73,067,548	36,533,774	36,533,774	14,613,509
56	이혜강	2018-07-03	167,909,781	-	2020-08-11	167,909,780	83,954,890	83,954,890	33,581,956
57	문윤희	2018-01-25	74,569,746	-	2020-11-16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58	송신복	2017-11-29	76,608,394	-	2020-11-16	76,608,394	38,304,197	38,304,197	15,321,678
59	오남규	2017-11-29	75,820,781	-	2020-11-16	75,820,780	37,910,390	37,910,390	15,164,156
60	위성미	2017-05-20	77,395,996	-	2020-11-16	77,395,996	38,697,998	38,697,998	15,479,199
61	이광재	2017-11-29	74,569,746	-	2020-11-16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62	정동형	2018-05-02	75,820,781	-	2020-11-16	75,820,780	37,910,390	37,910,390	15,164,156
63	조은미	2018-10-13	73,818,658	-	2020-11-16	73,818,658	36,909,329	36,909,329	14,763,731
64	김미희주	2018-06-21	41,777,416	-	2020-11-16	41,777,416	20,888,708	20,888,708	8,355,483
65	김지인		41,777,415		2020-11-16	41,777,414	20,888,707	20,888,707	8,355,483
66	조은성	2017 06 29	34,656,029	2020-11-16	34,656,028	17,328,014	17,328,014	6,931,205	
67	이미영	2017-06-26	34,656,028	-	2020-11-16	34,656,028	17,328,014	17,328,014	6,931,205
68	신영	2017-12-29	74,569,746	-	2020-11-26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69	한성욱	2017-06-30	87,491,746	-	2020-11-26	87,491,746	43,745,873	43,745,873	17,498,349
03	01	2018-07-06	180,357,037	-	2020-11-26	180,357,036	90,178,518	90,178,518	36,071,407
70	현영	2017-03-30	78,183,588	-	2020-11-26	78,183,588	39,091,794	39,091,794	15,636,717
71	김애심	2018-11-13	73,067,549	-	2020-09-10	73,067,548	36,533,774	36,533,774	14,613,509
72	박송이	2017-11-07	75,320,855	-	2020-09-10	75,320,854	37,660,427	37,660,427	15,064,171
73	손종필	2018-06-15	72,595,106	-	2020-09-10	72,595,106	36,297,553	36,297,553	14,519,021
74	이경신	2017-12-27	77,395,996	-	2020-09-10	77,395,996	38,697,998	38,697,998	15,479,199
75	이우길	2018-05-26	75,820,781	-	2020-09-10	75,820,780	37,910,390	37,910,390	15,164,156
	-1112	2018-05-26	72,595,106	-	2020-09-10	72,595,106	36,297,553	36,297,553	14,519,021
76	황미연	2018-04-30	73,067,549	-	2020-09-10	73,067,548	36,533,774	36,533,774	14,613,509
77	구선영	2018-08-21	36,909,329	-	2020-09-10	36,909,328	18,454,664	18,454,664	7,381,865
78	오창식		36,909,329		2020-09-10	36,909,328	18,454,664	18,454,664	7,381,865
79	기호진	2018-05-09	75,820,781	227,462,341	2020-09-14	75,820,780	37,910,390	37,910,390	15,164,156
80	임원채	2017-11-07	78,183,588	-	2020-12-11	78,183,588	39,091,794	39,091,794	15,636,717
81	지겸자	2018-08-24	36,533,775	-	2020-12-11	36,533,774	18,266,887	18,266,887	7,306,755

					소장 부본		위약금		
순번	원고	계약일	계약금	잔금	최종송달일	항소심 인용금액	1심 인용금액	항소심 추가인용금액	위약금(20%)
82	최혜령		36,533,774		2020-12-11	36,533,774	18,266,887	18,266,887	7,306,754
83	김영숙	2017-01-09	75,320,855	-	2020-10-13	75,320,854	37,660,427	37,660,427	15,064,171
84	민인욱	2018-07-12	74,569,746	-	2020-10-13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85	이권일	2017-11-17	78,971,201	-	2020-10-13	78,971,200	39,485,600	39,485,600	15,794,240
86	장경아	2017-12-27	78,971,201	-	2020-10-13	78,971,200	39,485,600	39,485,600	15,794,240
87	조성해	2017-08-28	74,957,913	-	2020-10-13	74,957,912	37,478,956	37,478,956	14,991,582
88	유영우	2017-04-17	64,880,646	-	2020-12-22	64,880,646	32,440,323	32,440,323	12,976,129
89	이기욱	2017-10-24	76,608,394	-	2020-12-22	76,608,394	38,304,197	38,304,197	15,321,678
90	김병현	2017-12-12	74,569,746	-	2021-02-15	74,569,746	37,284,873	37,284,873	14,913,949
91	김성환	2017-11-03	42,218,022		2021-02-15	42,218,022	21,109,011	21,109,011	8,443,604
92	권정구	2017-11-03	42,218,021	-	2021-02-15	42,218,020	21,109,010	21,109,010	8,443,604
93	임성한	2017-07-02	76,608,394	-	2021-02-15	76,608,394	38,304,197	38,304,197	15,321,678
95	8.95	2017-09-21	77,395,996	-	2021-02-15	77,395,996	38,697,998	38,697,998	15,479,199
94	이재춘	2017-10-21	71,565,352	-	2020-07-31	71,565,352	35,782,676	35,782,676	14,313,070
95	김학주	2017-06-13	59,831,583	-	2021-02-04	59,831,582	29,915,791	29,915,791	11,966,316
96	오정우	2017 00 27	44,195,779		2021-03-31	44,195,778	22,097,889	22,097,889	8,839,155
97	김소연	2017-09-27	44,195,779	-	2021-03-31	44,195,778	22,097,889	22,097,889	8,839,155
98	한정재	2017-04-18	58,024,893	-	2020-12-18	58,024,892	29,012,446	29,012,446	11,604,978
	합계		7,366,965,549	339,899,211	-	3,683,482,750	3,683,482,750	3,683,482,750	1,473,393,068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단위 : 원)

순 번	원고	호실	총 분양대금	계약일	계약금	잔금	위약금	합계
1	김상우	1622	766,083,940	2017-03-23	76,608,394	-	76,608,394	153,216,788
2	김성은	3721	1,693,609,370	2018-04-20	169,360,937	-	169,360,937	338,721,874
3	김현정	2809	745,697,460	2017-10-21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4	노미애	3502	753,208,550	2017-12-07	75,320,855	-	75,320,855	150,641,710
5	박경표	2912	745,697,460	2017-09-28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6	박성철	3010	753,208,550	2017-12-16	75,320,855	-	75,320,855	150,641,710
7	박혜자	3208	753,208,550	2017-03-23	75,320,855	-	75,320,855	150,641,710
7	릭에사	3723	675,474,410	2017-10-26	67,547,441	-	67,547,441	135,094,882
8	서진원	1729	766,083,940	2018-04-20	76,608,394	-	76,608,394	153,216,788
9	윤수경	2517	1,734,505,440	2018-04-30	173,450,544	-	173,450,544	346,901,088
10	윤영찬	2906	745,697,460	2017-06-12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11	정종섬	1421	766,083,940	2017-10-21	76,608,394	-	76,608,394	153,216,788
12	홍순익	2220	773,959,960	2017-05-01	77,395,996	-	77,395,996	154,791,992
13	강애순	2928	749,579,130	2017-08-15	74,957,913	112,436,870	74,957,913	262,352,696
14	강은아	3725	610,360,500	2017-06-29	61,036,050	-	61,036,050	122,072,100
15	고상호	3228	757,455,260	2017-07-21	75,745,526	-	75,745,526	151,491,052
16	고행린	3428	757,455,260	2017-06-30	75,745,526	-	75,745,526	151,491,052
17	김인혁	2425	781,835,880	2017-10-22	78,183,588	-	78,183,588	156,367,176
18	김정수	2811	745,697,460	2017-12-26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19	도주아	1329	766,083,940	2018-05-14	76,608,394	-	76,608,394	153,216,788
20	박수진	2607	745,697,460	2018-05-31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21	박정란	2105	738,186,580	2018-05-28	73,818,658	-	73,818,658	147,637,316
22	신경아	2707	380,359,770	2017 01 00	38,035,977		38,035,977	76,071,954
23	김명희	3707	380,359,760	2017-01-09	38,035,976	-	38,035,976	76,071,952
24	신원범	1012	369,093,290	2010 00 20	36,909,329		36,909,329	73,818,658
25	김정미	1813	369,093,290	2018-08-30	36,909,329	_	36,909,329	73,818,658

순 번	원고	호실	총 분양대금	계약일	계약금	잔금	위약금	합계
26	신정섭	1828	773,959,960	2017-12-20	77,395,996	-	77,395,996	154,791,992
27	안강호	1225	379,103,910	2017 07 15	37,910,391		37,910,391	75,820,782
28	임미옥	1225	379,103,900	2017-07-15	37,910,390	-	37,910,390	75,820,780
29	양민영	2706	745,697,460	2017-11-21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30	양선희	2002	372,848,730	2010 02 11	37,284,873		37,284,873	74,569,746
31	고상수	2903	372,848,730	2018-02-11	37,284,873	-	37,284,873	74,569,746
32	이성희	1212	723,164,610	2018-02-03	72,316,461	-	72,316,461	144,632,922
33	이순한	2020	773,959,960	2017-05-17	77,395,996	-	77,395,996	154,791,992
34	이은주	3531	604,338,060	2017-04-05	60,433,806	-	60,433,806	120,867,612
35	이현미	2515	745,697,460	2018-04-11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36	이현숙	3623	789,712,010	2017-01-10	78,971,201	-	78,971,201	157,942,402
37	정의진	2519	781,835,880	2017-05-24	78,183,588	-	78,183,588	156,367,176
38	최병철	932	635,472,490	2017-07-21	63,547,249	-	63,547,249	127,094,498
39	한광일	2503	745,697,460	2018-09-09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40	권채현	3801	1,771,346,630	2017-05-17	177,134,663	-	177,134,663	354,269,326
41	김왕식	1210	458,371,590	2017 02 26	45,837,159		45,837,159	91,674,318
42	이수정	1319	458,371,590	2017-03-26	45,837,159	-	45,837,159	91,674,318
43	박천일	1930	741,703,210	2017-12-08	74,170,321	-	74,170,321	148,340,642
44	박태서	1510	458,371,590	2017 07 26	45,837,159		45,837,159	91,674,318
45	이지영	1519	458,371,590	2017-07-26	45,837,159	-	45,837,159	91,674,318
46	변은영	2218	883,915,590	2017-05-30	88,391,559	-	88,391,559	176,783,118
47	석류미	826	726,703,720	2018-08-10	72,670,372	-	72,670,372	145,340,744
48	손훈	2915	745,697,460	2017-11-16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49	이성희	1610	730,675,490	2018-10-18	73,067,549	-	73,067,549	146,135,098
50	이용석	2628	749,579,130	2018-01-11	74,957,913	-	74,957,913	149,915,826
51	조미우	2922	781,835,880	2017-04-01	78,183,588	-	78,183,588	156,367,176
52	최영신	827	726,703,720	2018-08-11	72,670,372	-	72,670,372	145,340,744
53	김소원	3417	1,752,004,300	2017-07-20	175,200,430	-	175,200,430	350,400,860
54	김은정	3622	789,712,010	2016-12-30	78,971,201	-	78,971,201	157,942,402
55	김혁	1716	730,675,490	2018-06-05	73,067,549		73,067,549	146,135,098

순 번	원고	호실	총 분양대금	계약일	계약금	잔금	위약금	합계
56	이혜강	3806	1,679,097,810	2018-07-03	167,909,781	-	167,909,781	335,819,562
57	문윤희	2408	745,697,460	2018-01-25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58	송신복	1429	766,083,940	2017-11-29	76,608,394	-	76,608,394	153,216,788
59	오남규	1126	758,207,810	2017-11-29	75,820,781	-	75,820,781	151,641,562
60	위성미	2125	773,959,960	2017-05-20	77,395,996	-	77,395,996	154,791,992
61	이광재	2602	745,697,460	2017-11-29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62	정동형	1229	758,207,810	2018-05-02	75,820,781	-	75,820,781	151,641,562
63	조은미	1913	738,186,580	2018-10-13	73,818,658	-	73,818,658	147,637,316
64	김미희주 (KIMMEHE)U)	2829	417,774,160	2018-06-21	41,777,416		41,777,416	83,554,832
65	김지인 (KIMJEAN)	2029	417,774,150	2010-00-21	41,777,415	-	41,777,415	83,554,830
66	조은성	802	346,560,290	2017-06-28	34,656,029		34,656,029	69,312,058
67	이미영	002	346,560,280	2017-00-20	34,656,028	-	34,656,028	69,312,056
68	신영	2606	745,697,460	2017-12-29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69	한성욱	1518	874,917,460	2017-06-30	87,491,746	-	87,491,746	174,983,492
09	인경국	3816	1,803,570,370	2018-07-06	180,357,037	-	180,357,037	360,714,074
70	현영	2619	781,835,880	2017-03-30	78,183,588	-	78,183,588	156,367,176
71	김애심	1616	730,675,490	2018-11-13	73,067,549	-	73,067,549	146,135,098
72	박송이	3215	753,208,550	2017-11-07	75,320,855	-	75,320,855	150,641,710
73	손종필	1130	725,951,060	2018-06-15	72,595,106	-	72,595,106	145,190,212
74	이경신	2229	773,959,960	2017-12-27	77,395,996	-	77,395,996	154,791,992
75	이우길	1029	758,207,810	2018-05-26	75,820,781	-	75,820,781	151,641,562
13	시구글	1030	725,951,060	2018-05-26	72,595,106	-	72,595,106	145,190,212
76	황미연	1707	730,675,490	2018-04-30	73,067,549	-	73,067,549	146,135,098
77	구선영	1010	369,093,290	2010 00 21	36,909,329		36,909,329	73,818,658
78	오창식	1810	369,093,290	2018-08-21	36,909,329	-	36,909,329	73,818,658
79	기호진	1128	758,207,810	2018-05-09	75,820,781	227,462,341	75,820,781	379,103,903
80	임원채	2427	781,835,880	2017-11-07	78,183,588	-	78,183,588	156,367,176
81	지겸자	1606	365,337,750	2010 00 24	36,533,775		36,533,775	73,067,550
82	최혜령	1606	365,337,740	2018-08-24	36,533,774	-	36,533,774	73,067,548
83	김영숙	3609	753,208,550	2017-01-09	75,320,855		75,320,855	150,641,710

순 번	원고	호실	총 분양대금	계약일	계약금	잔금	위약금	합계
84	민인욱	2407	745,697,460	2018-07-12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85	이권일	3327	789,712,010	2017-11-17	78,971,201	-	78,971,201	157,942,402
86	장경아	3319	789,712,010	2017-12-27	78,971,201	-	78,971,201	157,942,402
87	조성해	2728	749,579,130	2017-08-28	74,957,913	-	74,957,913	149,915,826
88	유영우	1732	648,806,460	2017-04-17	64,880,646	-	64,880,646	129,761,292
89	이기욱	1423	766,083,940	2017-10-24	76,608,394	-	76,608,394	153,216,788
90	김병현	2708	745,697,460	2017-12-12	74,569,746	-	74,569,746	149,139,492
91	김성환	3701	422,180,220	2017-11-03	42,218,022		42,218,022	84,436,044
92	권정구	3/01	422,180,210	2017-11-03	42,218,021	-	42,218,021	84,436,042
93	임성한	1526	766,083,940	2017-07-02	76,608,394	-	76,608,394	153,216,788
95	505	1925	773,959,960	2017-09-21	77,395,996	-	77,395,996	154,791,992
94	이재춘	907	715,653,520	2017-10-21	71,565,352	-	71,565,352	143,130,704
95	김학주	2831	598,315,830	2017-06-13	59,831,583	-	59,831,583	119,663,166
96	오정우	1010	441,957,790	2017 00 27	44,195,779		44,195,779	88,391,558
97	김소연	1918	441,957,790	2017-09-27	44,195,779	-	44,195,779	88,391,558
98	한정재	1133	580,248,930	2017-04-18	58,024,893	-	58,024,893	116,049,786
	합계		73,669,655,490	-	7,366,965,549	339,899,211	7,366,965,549	15,073,830,309

정본입니다.

2023. 7. 5.

광주고등법원(제주)

법원사무관 이승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광주고등법원(제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 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 을 계산함에 유의).